



가. 명예퇴직대상

○ 2급이하 일반직, 지방소방정감이하의 소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명예 퇴직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10년이내에 자진퇴직하는 자, 단 5급(연구관 포함) 이상은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기간중 자진 퇴직하는 자

- ┌ 5급이상 : 정년퇴직일이 1997. 12. 31. 부터인 자
- └ 6급이하 및 기능직 : 정년퇴직일이 1997. 12. 31부터 2006. 12. 31. 까지인 자

나. 신청기간

- 1차 : '96. 8. 26. ~ 8. 31.
- 2차 : '96. 11. 21. ~ 11. 27.

다. 명예퇴직예정일 - 매분기 말일자

라. 명예퇴직신청자 제출서류

- 1) 명예퇴직 사직원 1부
- 2)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서 1부
- 3) 명예퇴직 요건 심사서 1부 (소속기관 작성)
- 4) 명예퇴직신청자 명단 1부 (소속기관 작성)
- 5) 공적조서 1부

• 국가직공무원 명예퇴직

○ 신청기간

- ┌ 1차 : '96. 8. 26. ~ 8. 31. ( 9. 5까지 총무처장관에게 추천)
- └ 2차 : '96. 11. 21. ~ 11. 27. (12. 3까지 " " )

- 위 신청기간이외 당해기관 조직개편,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을 명예퇴직코자하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과의 사전협의로 신청 가능

○ 대상자 선정 및 추천

- 예산범위내에서 상위직·장기근속자 우선 총무처장관에게 추천

세부사항은 '96. 7. 3. 자 관보13352호 총무처 공고1996-30호 참조

2. 자치구 및 소방본부는 본 계획과 연계하여 자체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 공고, 신청접수, 심사, 특별승진, 명예퇴직결정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행하기 바랍니다.

3. 명예퇴직 관련 참고 규정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대통령령 제14484호 '94. 12. 31)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개정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지침 (총무처 예규 제267호 '93. 11. 15)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 4)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4 (공무원임용령 제39조)
- '96년도 하반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시행계획 공고 (총무처 공고1996-30호, '96. 7. 3. 자 관보13352)

첨부 '96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1부.

서울특별시장

수신처 서과1-73, 서본부1-3, 서사1-40, 서의과1-3, 서구1-25

( 제 3 안 )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시보 공고의뢰

1.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별첨공고(안)과 같이 공고하고자 공고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일자 : '96. 7. 25.

첨부 '96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시행계획공고(안) 1부. 끝.

인사과장

3-3

106

1049

공 고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 1996- 호

|      |             |   |      |
|------|-------------|---|------|
| 공고일자 | 1996. 7. 27 | 제 | 211호 |
| 담당자  | 행정이사/정      | 인 | 무담   |
| 처    | 행정          | 장 | 김    |

한글로

# 1996年度下半年期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名譽退職施行計劃公告

地方公務員名譽退職手當支給規程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1996年度下半年期(1次, 2次) 서울特別市 地方公務員 名譽退職施行計劃을 다음과 같이 公告합니다.

1996 년 7 월 일

서울 특별 시장

## 1. 名譽退職對象

2급이하 일반직·지방소방정감이하 소방공무원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5급이상은 (연구·지도관 포함)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자와 6급이하 및 기능직은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10년이내에 자진퇴직하는 자

## 2. 名譽退職申請

가. 신청기간 (분기 1회, 4급이상은 수시가능)

- 1차 : 96. 8. 26 ~ 8. 31 (명예퇴직예정일 9월말)
- 2차 : 96. 11. 21 ~ 11. 27 (명예퇴직예정일 12월말)

나. 신청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명예퇴직사직원과 함께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은후 시장에게 제출

### 3. 名譽退職對象者의 制限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신청 개시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나 비위조사 중인 자
- 다.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 라. 명예퇴직예정일 현재까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2조(명예퇴직대상자의 요건)에 열거한 공무원(경력직)으로 계속해서 재직한 기간이 5년미만인 자,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거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는 제외

### 4. 名譽退職者 對象者의 審査 및 決定

서울특별시장은 명예퇴직 희망자의 신청서를 받아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5. 名譽退職優待

가. 명예퇴직 수당지급 -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 지급

- 1년이상 5년이내인 자 : 퇴직당시 월봉금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 : 퇴직당시 월봉금액의 반액 ×  $(60 + \frac{\text{정년잔여월수} - 60}{2})$
- 10년초과인 자 :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 특별승진자의 퇴직당시는 특별승진직전임

나. 특별승진 및 표창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 3 제1항 제4호  
(단, 승진임용제한을 받는자 제외)

### 6. 其他事項

가. 본인의 자필사직원을 확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 추천 하여서는 아니되며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자나 비위조사중인자 등과 같이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대통령령 제14484호 94. 12. 31) 및 총무처예규 제267호(93. 11. 15)참조 (국가공무원은'96. 7. 3. 자 관보13352호 참조)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기재상 주의 :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또는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                     |   |             |  |          |     |
|---------------------|---|-------------|--|----------|-----|
| ① 소 속               |   | ② 공 구 무 원 분 | <input type="checkbox"/> 일반직<br><input type="checkbox"/> 특정직 ( )<br><input type="checkbox"/> 기능직 | ③ 직 또는등급 |     |
| ④ 성 명               | 한 글   | ⑤ 주민등록번호    |  |          |     |
|                     | 한 자   | ⑥ 주 소       |  | □□□-□□□  |     |
| ⑦ 전화번호 (자택)         |   | ⑧ 근 속 년 수   | 년 월  | 정년일      | 년월일 |
| ⑩ 정년구분              |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계급정년 |             | ⑪ 수당청구액  |          |     |
| ⑫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 년 월   | ⑬ 산 출 내 역   |  |          |     |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 : 1. 명예퇴직원 1부  
 2. 명예퇴직자 요건심사서 (소속기관 작성) 1부  
 3. 기관장확인서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제4조 단서규정 해당자) 1부

199  
 신청인 (인)

|         |       |     |       |     |
|---------|-------|-----|-------|-----|
| ※ ⑭ 확 인 | 인 사 당 | (인) | 연 금 당 | (인)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9  
 (소속기관의 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명예퇴직사직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사유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  
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자필)

19 년 월 일

위 원 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 1. 징계의결 요구사항에 있지 않음
- 2. 형사사건으로 기초중에 있지 않음
- 3. 수사기관에 비위조사중에 있지 않음
- 4. 비위에 대한 연대책임자가 아님
- 5. 면직사유 :

확인사항

위 확인자 : 직위

성명

(인)

K

110

108 B

## 명예퇴직자 요건심사서

|   |   |      |
|---|---|------|
| 인적사항  | 소 속 :                                   |      |
|   | 직 급 :                                   |      |
|   | 성 명 :                                   |      |
| 명예퇴직<br>제외요건<br>해당여부  | 징계의결 요구증인지 여부                           | 해당없음 |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증인지 여부                 | 해당없음 |
|   | 명예퇴직대상공무원으로 계속근무기간 5년 미만인지 여부           | 해당없음 |
|   |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이거나 비위조사증인지 여부                | 해당없음 |
|   |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증인지 여부 | 해당없음 |
|   | 특별훈련경비 반납 대상자 여부                        | 해당없음 |
|   | 기타 명예퇴직제도 취지상 부적격자인지 여부                 | 해당없음 |
| 조사작성 및 확인자<br><br>199    년        월        일<br><br>기관명        직위 (주무과장)        직급        성명        (인) |   |      |



## '96. 하반기 (1 - 2차) 명예퇴직 신청자 명단

( 기관명 : )

| 소속<br>직 및<br>위 | 직급<br>(현직<br>승진일) | 성명<br>(주민등록<br>번호) | 재직기간 |      | 정년<br>구분 | 정년<br>예정일 | 정년<br>잔여기간 | 수당지급<br>예정액<br>(호봉) |
|----------------|-------------------|--------------------|------|------|----------|-----------|------------|---------------------|
|                |                   |                    | 정규직  | 연금법상 |          |           |            |                     |
|                |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직    성명                  (인)

• 확인자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3조의 인사담당관임.

6

112

110

75